
IP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 선진 IP금융 모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서 경** · 권 영 관***

목 차

- I. 서론
- II. IP유동화 플랫폼을 통한 IP거래 및 금융 연계: IPXI 사례
- III. Public IP자산 지표 및 지수 사례
 - 1. Patent Scorecard
 - 2. Ocean Tomo 300® Patent Index
- IV.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2013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 201310002,01). 본 논문에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삼성전자, 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전략팀(kyung2.seo@samsung.com).

*** 교신저자,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kwonyk@sogang.ac.kr).

초록

무형자산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최근 국내에서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IP자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IP자산 거래의 활성화나 방어형 펀드, 특허담보대출 등에 초점을 맞춘 IP금융 활성화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IP자산 거래가 갖는 구조적인 한계점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IP금융 비즈니스 모델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새로운 IP금융 활성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IP자산에 대한 수요자와 투자자의 시각에서 보다 효율적인 IP자산 유통화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객관적인 IP기반 지표나 지수에 기반을 둔 직접 IP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가 향후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석이 되어 관련된 연구들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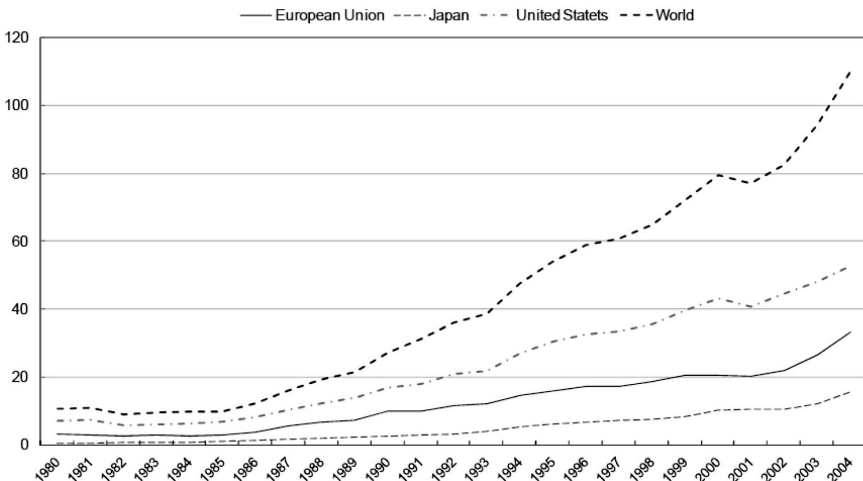
IP금융, IP자산, IP유통화 플랫폼, IP포트폴리오 지표, IP 지수

I. 서론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이 경제성장에 주요 요인이라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¹⁾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지식재산(IP)은 더 이상 대규모 매몰비용이 지출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사례들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OECD의 따르면 1980년대 전 세계적으로 라이선스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그림 1〉참조), 개별 기업의 대표적인 예로 1990년대 IBM이 특허자산을 재정비, 라이선스 활동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파산을 앞둔 TI역시 1980년대부터 보유 특허를 재평가 후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후 반도체 업체를 상대로 공격적인 라이선스 정책을 펼침으로써 40억 달러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확보한 사례는 IP가 기업의 R&D 활동의 부산물이나 추가적인 비용발생

〈그림 1〉 주요국의 라이선스 수입 동향

(단위: Billions USD)



출처: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6

1) Hand, J. & Lev, B., *Intangible Assets: Values, Measures, and Risks*,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의 원천이 아닌 새로운 금전적 수익 창출을 위한 중요한 자산임을 보여주고 있다(Rivette and Kline, 2000).²⁾

보다 최근의 예로 2011년 시작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및 디자인 소송의 경우, 양사의 법률 비용은 4억 달러 이상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1심 판결에는 삼성이 약 6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애플사에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³⁾ 이와 같은 판결은 수익 달러의 비용을 IP 소송에 지출한 애플이 손해배상금으로 그 수십 배에 달하는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Patent Troll로 알려진 미국의 Acacia Research Corporation은 전 세계로부터 매입한 특허를 소송과 라이선스에 활용하여 2012년에만 2억5000만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였으며 2006년 이후 39%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⁴⁾ 한편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양도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MS에 800여 개의 특허를 매각한 AOL은 10억 달러를, 모토로라는 특허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구글에 의해 125억 달러에 합병되었으며,⁵⁾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파산한 코닥이나 북미 최대 통신업체 노텔의 경우 핵심 자산인 보유 특허를 매각함으로써 각각 5억 2500만 달러와 25억 달러를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⁶⁾ 이상의 예들은 기업 활동에 있어 IP의 자산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요한 금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기업들의 IP기반 비즈니스 활동이 과거에 비해 보다 많은 비용과 수익을 수반함으로써 향후 IP금융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실무적으로나 학계에서도 IP금융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Rivette, K. G. & Kline, D., "Discovering New Value in Intellectual Property", *Harvard Business Review*, Vol.55(2000), pp.54-66.

3) 디지털타임즈,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30402010151759002>, 검색일: 2013. 7. 9.

4) 2012년 Annual report 참조,

<<http://www.acaciaresearch.com/docs/AcaciaFactSheet4thqtr2012.pdf>>, 검색일: 2013. 7. 9.

5) IT World, <<http://www.itworld.co.kr/news/78907>>, 검색일: 2013. 7. 9.

6)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161100&cloc=olink|article|default>, 검색일: 2013. 7. 9.

여전히 국내·외에서 기업의 금융 과정에서 IP는 충분히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수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에 있어 무형자산에 대해 여전히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재무정보에서도 IP와 같은 무형자산에 관한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높은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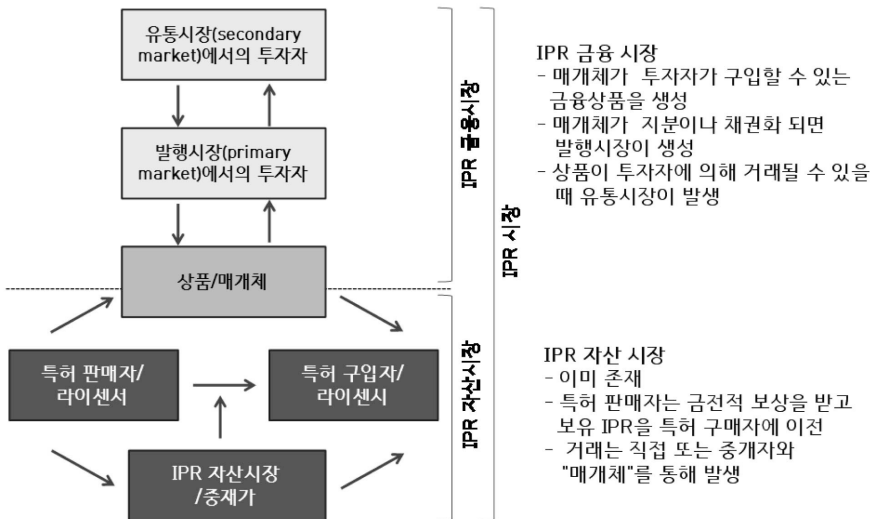
하지만 근래 들어 기업들이 IP 리스크 제거를 위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소송이라는 사후적 방법뿐 아니라 IP의 매매 또는 라이선스와 같은 사전 대응 방식이 보다 일반화되어감에 따라 IP자산 거래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수익 창출의 원천을 모색하는 금융업계에서도 IP금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IP금융이 가장 발달된 미국의 경우에 IP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규에 대한 정비 및 논의가 활발하며 투자은행이나 벤처 투자자들은 기업이 보유한 IP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Stevens, 2005). 특히 특허 라이선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이 IP기반 담보대출의 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Nikolic, 2009). 자금대출의 담보로 IP자산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에 IP자산을 매각하거나 라이선싱을 통해 기대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과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Amable et al., 2010). IP자산을 통한 금융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IP가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수입을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IP증권 발행이 성공한 사례는 극히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성공한 경우에도 대부분은 특허(Patents)가 아닌 저작권(Copyrights)나 상표(Trademarks)이다.⁷⁾ 또한 IP증권 발생과 달리 IPRs에 대한 권리 자체의 이전이 수반되는 다른 형태의 IP금융 방법인 “매각 후 재실시(sale and lease back)”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각 후 재실시를 통한 IP금융은 1993년 Aberlyn Capital Management사가 방사능의약품(radio-pharmaceutical products) 전문 바이오기업인 RhoMed사를 대상으로 한 IP금융 공급을 한 이후 잘 알려지게 되었다.⁸⁾

7) Calderini, M. & Odasso, M.C., “Intellectual property portfolio securitization: an evidence based analysis”, *Innovation Studies Working Paper*, 1(2008).

8) Lerner, J. & Tufano, P., “Aberlyn Capital Management: July 1993”, *Harvard Business School*

IP에 기반한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IP금융시장의 기초를 형성하는 IP자산이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IP자산시장이 견고하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대표적으로 Bader et. al.(2012)⁹⁾은 IP금융시장과 IP자산시장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에서의 IP금융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지 않는 이유는 IP자산의 거래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고 나아가 IP금융시장과의 연계가 미진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림 2〉 Bader et. al (2012)의 IPR시장 구조



하지만 근본적으로 IP자산시장은 일반적인 자산의 거래시장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는 않다. Monk(2009)¹⁰⁾에 의하면, 우선 공시제도를 통해 거래의 양 당사자가 적절한 정보를 확보하고

Case, No.294083(1994).

9) Bader, M.A., et al. *Creating a financial market for IPR*, 2012.

10) Monk, A., "The emerging market for intellectual property: drivers, restrainer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Vol.9 No.4(2009), pp.469-491.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가격결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식 또는 자본 등의 거래 시장과는 달리 IP자산의 거래는 양 당사자가 쉽게 납득할 수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 결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양 당사자 간의 IP권리범위 및 유효성에 대한 정보 비대칭 및 가치 평가기준의 부재로 인해 IP자산 거래는 탐색비용을 포함한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일반적으로 거래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이 길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또한 양 당사자 간의 거래 실패시 발생할 수도 있는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구매자 측에서는 공개적으로 거래를 제안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거래의 사전 단계로 소송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이처럼 IP자산은 기존의 금융시장에서 취급되고 있는 자산과 달리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자산이기 때문에¹¹⁾ 결국 IP자산 거래시장을 매개로 한 IP금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IP자산 거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중개조직(Intermediaries)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IP거래의 중개조직은 주로 IP자산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의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의 역할이 거래대상을 발굴하여 직접 IP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라이선스 활동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IP자산 매입과 개발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펀드를 조성하기도 하고, 나아가 로열티와 같은 IP자산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여 재투자하기도 한다. 또한 IP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소유권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투자하여 소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금의 공급원이 될 뿐만 아니라 소유권자의 IP자산 개발과 활용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배분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현재 IP자산시장에서 중개조직은 목적에 따라 전통적인 브로커 유형뿐 아니라 최근에는 실제 제조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NPEs(Non-Practicing Entities) 유형으로 소송 회피 및 사업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자본을 출자한 기업을 대신하여 IP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하는 방어펀드(defensive

11) Wang, A.W., "Rise of the patent intermediaries", *Berkeley Tech. LJ*, Vol.25(2010), p.163.

aggregator), IP자산의 확보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축, 공격 또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펀드(offensive aggregator)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NPEs의 경우에는 단순히 IP거래를 중개하기보다 제조업체를 상대로 IP소송을 제기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거나 소송위험을 통해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받아내는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나라에서는 만연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기반 기업이 창출하는 IP자산을 통해 자본을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IP자산을 유동화시켜 이익을 창출·배분하고 IP자산 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IP자산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근래에는 NPEs가 IP금융시장으로 연계되는 등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IP 중개조직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IP자산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IP자산시장에서 주요한 변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IP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¹²⁾ 요컨대 IP 중개조직들은 IP자산시장에서의 IP거래 과정에서 기존의 금융시장과 연계시키기도 하고 직접 IP금융의 주요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IP자산시장뿐 아니라 IP금융시장에서도 그 역할이 점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IP자산시장과 IP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IP자산시장 및 IP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IP자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도 민·관의 공동노력으로 방어펀드의 일종인 ID(Intellectual Discovery)가 설립되고, 그 자회사로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이 설립되어 국내 IP자산시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보고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의 IP유동화 모델은 이미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다양한 IP유동화 메커니즘들인 매각 후 재실시(Sale and License Back), IP Pool Syndication, Pre Sale & Profit Sharing, IP M&A PEF, IP소송펀드(IP litigation fund)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³⁾ 한편 IP자산에 기반을 둔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 동

12) Yanagisawa, T. & Guellec, D., *The emerging patent marketplace*, No.2009/9, OECD Publishing, 2009.

13) i) Sale and License Back은 우수한 IP 보유기업의 보유 IP를 Fund가 매입하고 당해 기업에게 매입

산담보대출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허권 등 IPRs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¹⁴⁾ 최근에는 특허청과 한국산업은행이 협력하여 우수 IPRs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물적담보 없이 IPRs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IP금융을 추진하고 있다.¹⁵⁾ 이처럼 최근 국내의 IP자산시장 및 IP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주도의 노력들이 성공할 것인지, 그 성과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IP자산시장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IP금융 활성화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의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가겠지만, 이러한 노력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새로운 유형의 IP금융 모델들이 최근에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IP금융 모델로는 IP유통 플랫폼을 통한 IP금융과 IPRs자산에 기반한 지표 및 지수 모델이 포함된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IP금융 모델들이 조명을 받는 이유는 최근에 급부상했던 NPEs와 유사한 IP비즈니스 모델들에 기반을 둔 IP자산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¹⁶⁾과는 달리 IP자산의 거래 및 수익 창출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제한적이며 극소수의 IP자산만이 거래를 통해 자본화의 기회를 가지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¹⁷⁾는 점 때문이다. 새로운 유형의 IP금융 모델들이 갖는 중요한 특징

한 특허 등 IP에 대한 실시권을 하여하여 정기적으로 로열티를 받으며, Fund의 만기시 당해 기업은 Fund에 양도한 금액으로 양도 IP를 재매입하는 형태이다. ii) IP Pool Syndication은 수출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IP의 통상실시권을 제공하여 잠재적인 IP소송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송 위험이 높은 IP를 Fund가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매입한 IP를 업종별 Syndication 업체들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며, 기업은 Fund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Fund가 매입한 특허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iii) Pre Sale & Profit Sharing은 기업이 보유한 유향 IP를 펀드를 통해 고가에 매각하여 확보한 수입을 기업과 Fund가 공유하는 형태이다. iv) IP M&A PEF는 해외 핵심 IP기업 또는 해외 NPEs의 인수합병(M&A)을 통해 국내의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방어 Pool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v) IP Litigation Fund는 핵심 IP 및 추가 IP를 확보하여 IP침해기업 대상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14) 2009년 7월 3일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2년에 시행하였다.

15) 한국경제신문, 2013. 3. 18자.

16) Rivette, K. G. & Kline, D., "Discovering New Value in Intellectual Property", *Harvard Business Review*, Vol.55(2000), pp.54-66; Wang, A. W., "Rise of the patent intermediaries" *Berkeley Tech. LJ* Vol.25(2010), pp.159-200.

17) Martin, D. E., and Watson, J. O., "Patent Valuation: Is Fair Market Fair?", Lim, E.H. et al., *Patent i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What You Need to Know?*, Vol.1, PLI, New York, 2004.

은 기존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이미 작동이 검증된 금융시장의 장점과 IP자산에 기반한 금융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가진 IP자산의 가치를 가늠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거나 IPRs를 하나의 금융상품화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는 형태가 시도되고 있다. 실제로 Chen and Lin(2007)¹⁸⁾은 첨단기술 분야의 대만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MIT technology Review와 CHI Research Ins.(2004)¹⁹⁾는 미국의 기술기반 기업이 가진 특허분석을 통해 8개 분야의 기술 혁신 지표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기업이 가진 무형자산의 가치를 기업의 전체 가치에 반영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보다 더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IPXI(Intellectual Property Exchange International, Inc)는 투명한 IPRs의 시장 가격 형성을 통해 IP거래 효율화를 통한 IP금융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IP금융 모델들이 기존의 IP자산시장과 IP금융시장이 갖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IP금융 모델에 대한 연구가 저자가 알기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²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새로운 IP금융 모델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IP금융시장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IP유동화 플랫폼을 통한 IP거래 및 금융 연계: IPXI 사례

IPXI(Intellectual Property Exchange International, Inc.)는 미국의 Ocean Tomo사에 의해서 2008년에 설립된 IP금융거래소로 일종의 IP유동화 플랫폼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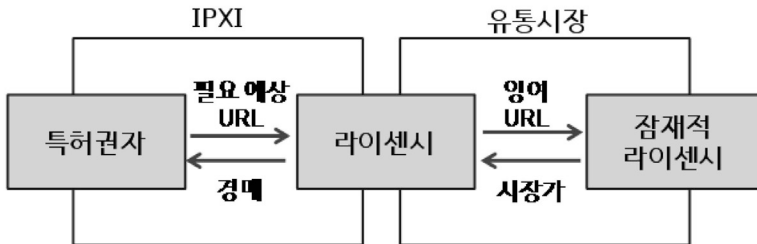
18) Chen, D.-Z., Lin, W.-Y., and Huang, M.-H., "Using essential patent index and essential technological strength to evaluate industrial technological innovation competitiveness", *Scientometrics*, Vol.71 No.1(2007), pp.101-116.

19) Technology Review and CHI Research, *Technology Review Patent Scorecard*, 2004.

20) 최근에 국내에서도 미국의 IPXI와 같은 지식재산권거래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일부 진행된 바가 있음.

로 볼 수 있다. IPXI는 IP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거래를 지원함으로써 IP의 투명한 시장가격을 형성하여 거래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그림 3〉 참조). IPXI의 등장은

〈그림 3〉 IPXI 거래 모형



출처: IPXI 홈페이지 재구성

기존 IP자산 거래시장에서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높은 탐색 비용, 거래과정에서의 복잡한 협상 및 실사, 가치평가의 모호함으로 인한 거래당사자 간의 기대 가격의 간극 등을 표준화된 단위실시권계약(Unit License Right Contract, 이하 “ULR계약”이라 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ULR계약이란 상호 관련성이 있는 특허들을 하나의 군(群)으로 묶어 일괄 거래하는 계약이다. ULR계약을 통해 특허권자는 보유 특허의 현금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라이선스를 원하는 기업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손쉽게 라이선스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동시에 IP자산의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형성을 가능케 한다.

IPXI의 IP비즈니스 모델은 각 국가의 산업과 경제 규모별로 온실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허가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거나 남는 부분을 매매할 수 있게 한 제도인 탄소배출권의 거래모델과 매우 유사하다. IPXI 운영의 기본이 되는 표준화된 ULR계약은 IP에 대한 비차별적이며 비독점인 라이선스의 기본 거래단위이다. 기업은 IPXI가 제공하는 한 단위의 상품화된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해당 특허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응하는 상품 또는 기술의 필요한 수량을 예상하여 그 수량에 준하여 ULR계약을 구입한다. 예컨대 기업 A가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응되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1,000개 생산할 예정이라면 1,000

개의 ULR계약을 구입하면 된다. 만약 예상보다 적은 수량의 제품을 생산하게 되어 ULR계약이 남는 경우 유통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잉여 ULR계약을 재판매할 수 있다. 이 때 ULR계약의 유통시장 가격은 일반적인 채권경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매도 희망자가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고 제시된 가격에 매수자가 없을 경우 매도 희망가격을 점차 낮춰가다가 일정한 가격에 경매 참여자 중 ULR계약의 매수 희망자가 나오면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네덜란드 방식의 경매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가치평가 이견을 극복하고 시장에서 ULR계약의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도입한 방식이다.

IPXI의 IP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의 방어펀드나 공격형 NPEs 등과 비교하여 다양한 장점을 갖는다. 우선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라이선스를 원하는 수요자를 찾기 위해 여러 기업들 중 IP 침해 또는 침해 가능성의 유무를 개별로 탐색하지 않아도 된다. 별도의 가치평가와 같은 길고 지루한 협상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경사 로열티를 받기 위한 정기적인 실사도 필요 없기 때문에 법률비용을 비롯한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격이 형성되고 유통시장에서의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라이선스를 통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한편 라이선스를 원하는 주체 입장에서도 필요한 만큼의 라이선스 권리만 매입하고, 구입한 후 미사용하여 남은 ULR계약에 대해서는 유통시장에서 재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특허권자와 마찬가지로 특허의 가치평가나 협상과정이 생략될 수 있어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편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2011년 11월 Phillips,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Holdings, Com-Pac International, Rutgers대학, Northwestern대학, Utah대학 등 기업, 금융사, 대학 등으로부터 1천만 달러의 펀드 모집이 완료되었고, 이 투자기금을 기반으로 ULR계약의 거래를 위한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요컨대 IPXI 모델은 IP 라이선스 권리를 Unit 단위로 표준화하여 상품의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점,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공개적인 IP자산시장 및 IP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IPXI의 비즈니스 모델이 IP자산시장과 IP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효율적인 IP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갖는 것이 분명하지만, 성공적인 IP금융 플랫폼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는 당해 플랫폼의 객체가 되는 IP자산이 갖는 근본적인 특성에 기인한다. IP 권리 자체와 그 권리범위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말해 IP 라이선스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닌 몇 가지 법률적 조건에 부합하는 발명의 소유권이며 이 소유권은 권리화 이후에도 사후 법률적 판단에 의해 얼마든지 무효화될 수 있는 권리다. 또한 특허의 경우 청구범위를 통해 권리의 침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범위의 해석 역시 가치평가만큼이나 모호한 부분이 많고 실제로 소송과정에서도 청구범위의 해석을 위한 판결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당사자간의 의견차이가 큰 부분이다. 특허권자는 권리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여 침해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확대하고자 하는 반면 잠재적 라이선스 수요자는 좁게 해석하여 침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쟁을 통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상품이 매입을 시도하다 조건이 맞지 않아 매입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데 반해 IP 라이선스의 시도는 특허권자로 하여금 라이선스 수요자의 특허 침해 여부를 강력히 의심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특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특허 라이선스 시도 자체가 향후 소송에서 의도적 침해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 3배의 손해배상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잠재적 라이선스 수요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Ⅲ. Public IP자산 지표 및 지수 사례

IP금융에서의 또 다른 시도는 기업이 가진 IP와 IP포트폴리오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해당 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의 기준으로 삼고자하는 시도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은 당해 기업이 가진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통해 이룩한 과거 및 현재의 경영성과(예컨대,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재무적 지표), 제한적인 정보에 기반한 미래 성장가

능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업이 가진 유형자산만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의 가치는 무형자산에 보다 크게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²¹⁾ 이와 같은 무형자산이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적 투자 및 M&A, 마케팅 등에 적절히 활용됨으로써 기업의 가치는 극대화될 수 있다.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표 이외에 무형자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 이에 기업이 가진 무형자산, 특히 IP자산을 특허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 비교하여 기업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몇 가지 시도가 최근에 실제 운영되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Wall Street Journal을 통해 실제로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Patent Scorecard 사례와 Ocean Tomo사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Patent Index 펀드에 대해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²²⁾

1. Patent Scorecard

1968년에 과학연구 지표 개발 및 분석에 특화된 컨설팅 기관으로 설립된 Patent Board²³⁾에서는 매년 기업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질과 양의 전반적인 평가를 계량화하여 전체 또는 각 산업별로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수치화된 Patent Scorecard는 기업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등 주요 혁신주체들의 혁신성을 측정,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발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Patent Board는 과학적 연구지표 및 특허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나 특허포트폴리오의 비즈니스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이 투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특허 분석 툴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OECD, *OECD Factbook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Paris: OECD, 2009.

22) Patent Scorecard와 Ocean Tomo Patent Index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관련 홈페이지의 내용에 기반하여 서술함.

23) Patent Board는 특허 정보 분석 전문기업인 ipIQ Global사의 비즈니스 명칭임.

Patent Board에서는 Patent scorecard를 측정하기 위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Quality, Quantity, Science, Speed 4개 영역의 6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먼저 Quality 영역은 Technology Strength™, Industry Impact™ 라는 두 가지 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Quantity 영역은 특허 등록 개수를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Science 영역은 Science Strength™ 와 Research Intensity™ 를, Speed 영역은 Innovation Cycle Time™ 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6개의 지표 중 특허 등록 개수를 제외한 5개의 지표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지표는 ipIQ 글로벌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독자 개발하였으며 대외적으로 자세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특허 데이터라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

〈표 1〉 Patent Scorecard Indicators

	지수	정의
Quality (질)	기술강도 (Technology Strength™)	특허의 질과 양 척도를 결합하여 특정 기업이 보유한 특허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순위 지표
	산업영향력 (Industry Impact™)	전체 특허집단과 비교하여 다른 특허들이 특정기업의 등록 US특허포트폴리오에 기반하여 창출되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Quantity (양)	등록 특허수	분석기간(1년) 동안 등록된 미국 특허 수
Science (과학)	과학강도 (Science Strength™)	과학적 지식과 양 척도를 결합하여 특정 기업이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시 과학적 지식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순위지표
	연구집중도 (Research Intensity™)	특정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가 과학연계도 평균값 이상을 갖는 특허들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
Speed (속도)	혁신주기 (Innovation Cycle Time™)	특허나 특허포트폴리오가 신규발명이나 기존 발명에 기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

출처: ipIQ Global 홈페이지.

으로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 및 도출 방식의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Patent Board는 매년 산업별로 지표 값들을 종합하여 혁신 기업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발표된 Patent Scorecard 중 전기통신, 반도체, IT, 소비자가전, 화학 등 5개 산업 부문의 보유 특허포트폴리오 평가 상위 10개 기술혁신 주체들은 <표 2>와 같다. 4년이 지난 2013년 현재 동일 산업부문의 보유 특허포트폴리오 평가 상위 10개 기술혁신 주체들은 <표 3>과 같다. 2009년에서 2013년 동안 각 산업부문의 특허포트폴리오의 종합적인 평가순위는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아이폰이라는 혁신적인 휴대통신 단말

<표 2> 2009년 발표된 Patent Scorecard

순위	통신 부문	반도체 부문	IT 부문	소비자가전 부문	화학 부문
1	Cisco	Intel	IBM	Sony	DuPont
2	AT&T	Micron Technology	Microsoft	Fujifilm	BASF SE
3	Nokia	IBM	HP	Samsung	Dow Chemical
4	Qualcomm	SanDisk	Ricoh	LG	Saudi Basic Industries
5	Motorola	Samsung	Canon	International Game Technologies	Honeywell
6	Samsung	Broadcom	Hitachi	Panasonic	LyondellBasell Industries
7	Alcatel-Lucent	Semiconductor Energy Lab	Oracle	Canon	RAG AG
8	Notel Networks	Texas Instrument	Sun Microsystems	Olympus	3M
9	Research In Motion	Xilinx	Xerox	Philips Electronics	Nitto Denko
10	Fujitsu	Toshiba	Samsung	Hitachi	Shin-Etsu Chemical

출처: Patent Board 홈페이지 재구성

기를 출시한 Apple사의 경우, 2009년 평가에서는 IT 및 전기통신 부문 모두에서 10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2013년 평가에서는 IT부문에서 보유 특허포트폴리오가 3위를 기록하여 최근에 IT부문에서 급성장한 기술혁신주체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IT부문의 경우 Google, 아마존닷컴 등이 특허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업체의 경우 삼성과 LG가 글로벌 기술경쟁력 측면에서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삼성의 경우 IT부문과 소비자가전 부문 모두에서 최근 보유 특허포트폴리오의 평가에서 10위권 이하로 급격히 밀려나는 반면 LG전자의 경우 소비자가전 부문에서 여전히 4위 자리를 유

〈표 3〉 2013년 발표된 Patent Scorecard

순위	통신 부문	반도체 부문	IT 부문	소비자가전 부문	화학 부문
1	Qualcomm	Intel	IBM	Sony	DuPont
2	BlackBerry	Semiconductor Energy Lab	Microsoft	International Game Technologies	BASF SE
3	AT&T	Samsung	Apple	Fujifilm	Dow Chemical
4	LG전자	Broadcom	Google	LG전자	Nitto Denko Saudi Basic Industries
5	Samsung	IBM	Canon	Panasonic	RAG AG
6	Cisco Systems	Micro Technology	Amazon.com	WMS Industries	Honeywell
7	Sprint Nextel	SanDisk	HP	Canon	LG화학
8	Ericsson	Marvell Technology 그룹	Rocoh	HTC	Chisso
9	Verizon	Toshiba	EMC	Nintendo	Sumitomo Chemical
10	Nokia 그룹	Renesas Electronics	Oracle	Samsung	Shin-Etsu Chemical

출처: Patent Board 홈페이지 재구성

지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부문에 있어서도 LG 화학이 2009년에 10위권 밖에 머물다가 최근 4년 사이 7위로 올라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업이 달성한 시장 성과와는 다른 측면에서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 결과가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표 2>와 <표 3>을 보면 이미 파산했거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역시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통신부문에서 2009년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 중 Notel Network사는 파산, Nokia, RIM(최근 Blackberry로 사명을 변경함), Motorola 등의 기업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피인수합병되었으며, Alcatel-Lucent 등은 지속적인 적자로 구조조정 중이다. 2013년 Patent Scorecard 평가결과를 보면 이러한 이들 기업들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특허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급격하게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Blackberry의 경우 최근 매각되기는 했지만 보유하고 있는 특허포트폴리오의 평가순위는 2위로 급격히 성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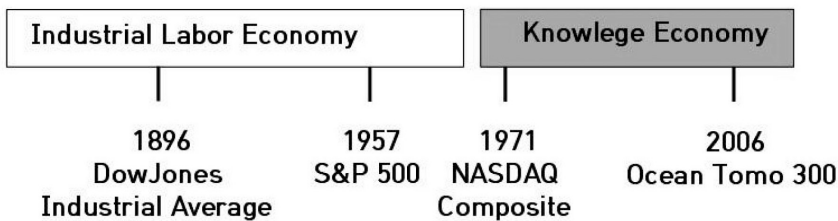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로부터 Patent Scorecard가 기업의 IP자산의 경쟁력 측면에서 나름대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특허 데이터를 통해 측정한 평가지표가 기업의 혁신 정도를 반영하고 이 지표에 따른 투자의사결정이 실제 수익과 연결된다면 높은 실효성을 확보하겠지만, 기업이나 국가의 특허 정책 또는 산업 등에 따라 특허활동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대다수 특허가 실제로 기업의 현재 또는 미래 제품에 직접 활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자료에 기반한 지표에만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이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은 특허자료가 갖는 태생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존의 재무정보에 기반을 둔 정보와 함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측면의 IP자산에 대한 평가지표를 동시에 참조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2. Ocean Tomo 300® Patent Index

지난 수년간 S&P 500 기업의 시장 가치는 회계상의 장부 가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업 가치가 무형자산에 의존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무형자산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과 금융자산만으로는 기업이 가진 실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대표적인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구글의 경우, 전체 자산 중 유형자산의 비중이 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⁴⁾ 이와 같이 기업이 가진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형 자산의 비중을 월등히 넘어서고 있는 지식기반경제하에서 기업의 가치평가 및 향후 전망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을 찾아 기존 금융시장과 연계를 하는 것이 IP금융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Ocean Tomo사는 2006년에 기업이 보유한 IP자산의 가치에 반영한 자체 Patent Index인 Ocean Tomo 300 Patent Index(이하 “OT300지수”라 함)를 개발하여 업계 최초로 IP 기반 투자 지수를 개발하여 실제로 운용함으로써 IP금융이 기존 금융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주었다.

〈그림 4〉 주요 금융지수의 등장



출처: Ocean Tomo Home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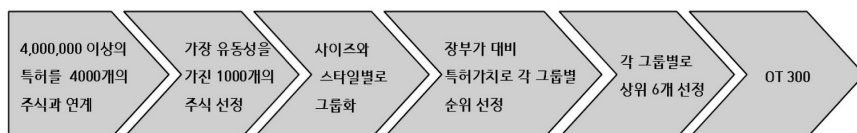
OT300지수는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상장기업 중 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추려낸 후 multi-generation citation 분석²⁵⁾을 통해 개별 등록 특허의 질과 상대

24) MK뉴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629242>>, 검색일: 2013. 7. 9.

25) Ocean Tomo가 개발한 특허가치 평가 방법인 PatentRatings System에서 사용하는 분석기법으로 US 6,556,992, US7,657,476, US7,716,226로 보호되고 있다.

적 가치를 산정한 후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을 사이즈와 형태에 따라 50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 때 각 그룹에 속한 기업의 특허가치를 장부가치로 나눈 값인 혁신비율(Innovation Ratio)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50개 그룹 각각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가진 상위 6개 기업으로 OT300지수를 구성하였다. <그림 5>는 OT300 지수의 구성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5> OT300 지수 구성 과정



출처: Ocean Tomo Homepage 재구성

OT300지수는 기업의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의 무형자산, 특히 특허자산을 기반으로 향후 기업의 가치변화를 전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표로, Ocean Tomo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 가치평가 방법인 PatentRatings System을 이용하여 도출한 특허 가치가 기업의 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던 S&P 500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의 투자 대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첨단 기술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의 개발과 상장은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 및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OT300 지수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및 나스닥 지수의 평균상승률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을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OT300지수는 기업의 IP자산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좀 더 정확히 예측하고 IP에 기반을 둔 직접금융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OT300지수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정은 기업이 가진 특허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다.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권리범위가 넓고 안정적인 소수의 특허 보유만으로 상당한 가치의 무형자산을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개별특허의 가치측정뿐

〈그림 6〉 OT300지수와 다우지수 및 나스닥지수



출처: 〈www.marketwarch.com〉, 검색일: 2013. 9. 23.

만 아니라 각각의 특허 소유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이 가진 정확한 특허 수를 확인하고 개별 특허의 가치를 세심하게 측정하는 것이 기업 전체의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업이 가진 수 개에서부터 수만 개에 이르는 특허를 정확히 파악하고 권리범위를 기초로 개별 특허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OT300지수는 Ocean Tomo사가 자체개발한 PatentRatings System이라는 방법으로 측정한 특허자산의 가치가 높은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보다 높은 투자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 주었으며, 따라서 기업이 보유한 IP자산의 가치가 좀 더 현실적인 수준에서 측정된다면 OT300지수와 같은 IP자산 기반의 Index는 향후 IP금융시장에 있어 새로운 벤치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결론 및 시사점

최근 국내에서 IP자산에 기반을 둔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들의 성과는 IP자산 거래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IP자산시장 역시 기대 만큼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P자산은 거래를 통해 IP금융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으나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이나 전통적인 금융자산과는 달리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IP자산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음악이나 영상물, 작품 등 저작권과 같이 사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IP자산과는 달리 특허자산은 누구도 그 기술의 사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언제든지 선행자료를 통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의 안정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특허자산 거래에 따른 손해나 리스크 역시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IP자산 중 특히 특허자산에 기반을 둔 금융시장은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IP자산시장과 IP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시도나 기존의 금융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IP금융 모델들이 도입되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주기에 충분하다.

먼저 IP자산시장 및 IP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IP 유동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IPXI 모델의 경우, IP라이선스 권리를 단위(unit)으로 하여 표준화함으로써 특허권자와 잠재적 실시권자 모두에게 고비용 저효율의 IP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와 협상과정을 생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비용, 실사비용 등 다양한 거래비용의 원천들을 효과적으로 제거시켜 준다. 나아가 경매를 통해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유통시장에서의 재판매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IP의 유동화를 기존의 접근법에 비해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한편 기업이 가진 무형자산, 특히 IP자산을 개별 특허가 아닌 특허포트폴리오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에 기반을 두어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의 참고정보로 활용하여 보다 직접적인 IP금융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실용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Patent Board의 Patent Scorecard와 Ocean Tomo사에 의해서 실제 운용되고 있는 Patent Index 펀드의 사례는 특허자료라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평가틀에 의해 기업이 가진 특허포트폴리오의 가치나 상대적인 순위를 평가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입장에서 기존의 재무정보에 기반을 둔 정보에 제한되지 않고 기업의 보유한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IP자산 거래시장 관점에서의 IP금융 활성화 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벤치마크가 되고 있다. 단순히 특허자료에 기반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기업이 가진 무형자산의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IP 기반 지표나 지수에 기반을 둔 IP금융의 활성화를 시도하는 것은 보다 투자자 시각에서 IP금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관점의 IP금융 비즈니스 모델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즉, 그동안 IP자산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IP금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IP자산 거래시장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에 매몰되기 보다는 보다 전향적인 시각에서 IP자산에 대한 수요자나 투자자의 시각에서 효율적인 IP자산의 유통화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객관적인 IP기반 지표나 지수에 기반한 IP금융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비용대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국내 IP자산 보호의 강화 및 관련 법률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IP자산시장과 IP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중개기관이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IP평가 및 금융에 전문성을 갖는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외의 새로운 IP금융 비즈니스 모델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의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으나, 관련 자료와 정보의 한계로 인해 보다 객관적인 엄밀한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에는 분석한 사례들에서 얻은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보다 직접적인 IP금융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계를 위한 심층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후속 연구에 본 연구가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해외 단행본〉

Hand, J. and Lev, B. *Intangible Assets: Values, Measures, and Risks*,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Martin, D. E., and Watson, J. O., “Patent Valuation: Is Fair Market Fair?”, Lim. E.H. et al., *Patent i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What You Need to Know?*, Vol.1, PLI, New York, 2004.

〈해외 학술지〉

Amable, B., Chatelain, J.-B., and Kirsten Ralf, K., “Patents as collateral”,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Vol.28 No.3(2010).

Calderini, M. and Odasso, M.C., “Intellectual property portfolio securitization: an evidence based analysis”, *Innovation Studies Working Paper*, 1(2008).

Chen, D.-Z., Lin, W.-Y., and Huang, M.-H., “Using essential patent index and essential technological strength to evaluate industrial technological innovation competitiveness”, *Scientometrics*, Vol.71 No.1(2007).

Lerner, J. and Tufano, P., “Aberlynn Capital Management: July 1993”,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No.294083(1994).

Monk, A., “The emerging market for intellectual property: drivers, restrainer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Vol.9 No.4(2009).

Nikolic, A., “Securitization of Patents and Its Continued Viability in Light of the Current Economic Conditions”, *Alb. LJ Sci. & Tech.* Vol.19(2009).

Rivette, K. G. and Kline, D., “Discovering New Value in Intellectual Property”, *Harvard Business Review*, Vol.55(2000)

Stevens, P. “Security Interests in Patents and Patent Applications”, *Pitt. J. Tech. L. & Poly*, Vol.6(2005).

Wang, A.W., “Rise of the patent intermediaries”, *Berkeley Tech. LJ*, Vol.25(2010).

〈기타 해외 자료〉

- Bader, M.A., et al. *Creating a financial market for IPR*, Institute of Technology Management, Univ. of St. Gallen, 2011.12.6.
- OECD, *OECD Factbook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ParisL: OECD, 2009.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6*, 2006.
- Technology Review and CHI Research, *Technology Review Patent Scorecard*, 2004.
- Yanagisawa, T. and Guellec, D., *The emerging patent marketplace. No.2009/9.*, OECD Publishing, 2009.

〈인터넷 자료〉

- <<http://www.ipxi.com/>>.
- <<http://www.marketwatch.com/>>.
- <<http://www.patentboard.com/>>.
- <<http://www.oceantomo.com/productsandservices/investments/indexes/ot300>>.
- <<http://www.intellectualventures.com/>>.
- <<http://www.rpxcorp.com/>>.
- <<http://www.alliedsecuritytrust.com/>>.
- <http://news.cnet.com/8301-13578_3-57496641-38/inside-intellectual-ventures-the-most-hated-company-in-tech/>.
- <<http://www.businessweek.com/stories/2006-07-02/inside-nathan-myhrvolds-mysterious-new-idea-machine>>.
- <http://www.ipxi.com/images/CFA_Magazine_Nov-Dec_2012_Get_Smarts.pdf>.
- <<http://www.nationalmagazine.ca/Articles/September-2012-Issue/Licensed-to-know.aspx>>.
- <<http://www.businessweek.com/news/2013-08-28/former-microsoft-executive-to-seek-3-billion-for-patent-fund>>.
- <http://www.dt.co.kr/contexts.html?article_no=2013030402010151759002>.

<<http://www.acaciaresearch.com/docs/AcaciaFactSheet4thqtr2012.pdf>>.

<<http://www.itworld.co.kr/news/78907>>.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161100&clck=olink | article | default](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161100&clck=olink%20article%20default)>.

A New Paradigm of IP-based Finance: Insights from Novel IP-based Financing Models

Kyung Seo & Youngkwan Kwon

Abstract

Under knowledge-based economy that intangible assets become major influences on economic growth, a variety of efforts for activating IP-backed finance are recently developed in Korea. However, it is highly uncertain that on-going efforts focusing on activation of IP assets transactions, defensive aggregator, patent loans, etc. becaus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IP assets. This paper seeks to find new directions for activating IP-based financing by examining advanced IP-based finance business models, which is recently emerging and may be more effective and direct ones that could overcome structural limitation of IP assets transactions. As a result, we suggest that new approaches to establish IP assets monetization platforms in favor of potential licensees of IP assets or more direct financing system for IP assets based on objective IP-based indicators or indexes can become new paradigm. We hope that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the foundation stone of future researches seeking new policy directions for activating IP-based finance.

Keywords

IP-based Finance, IP assets, IP Monetization Platform, Patent Scorecard, IP Index